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함안군, 하동군

내 용

보장기관은(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6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이 있으며, 이 중 사회서비스형사업단²⁰¹⁾은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이며, 또한 시장진입형사업단²⁰²⁾은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이상 발생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운영기간은 2년까지 허용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대 3년까지 운영 가능하나, 매출부

201) 신규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실시하되, 시·군·구청장이 사업의 특성, 수익창출효과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시장진입형 신규사업단 설치가능하며,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이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총투입예산의 30%이상일 경우에만 시장진입형으로 변경 가능

202) 시장진입형으로 신규사업단을 구성한 경우 사업실시 6월 후 총투입예산 대비 매출액을 확인하여 요건 미충족 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

진 등의 이유로 중도해체 또는 3년이 경과하도록 시장진입형사업단으로 전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단을 해체하고 그 매출적립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시·군·구 자활기금으로 조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다른 자활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동군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시장진입형사업단인 ‘○○영농’ 등 해체된 2개 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표 1] 시장진입형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시/군	자활센터명	사업단명	사업단 승인일	사업단 해체일	매출적립금	매출적립금 회수여부
계					55,464,493	
하동군	○○자활센터	○○영농	2009. 2. 2.	2013. 12. 31.	27,160,752	미회수
하동군	○○자활센터	○○○○○	2013. 5. 1.	2014. 8. 20.	28,303,741	미회수

또한, 경남 함안군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청소’(사회서비스형)와 ‘○○○○음식’(시장진입형) 등은 사업단 구성 후 3년 이상 경과하도록 시장진입형사업단으로 전환, 자활기업을 창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업단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표 2] 사업단 추진기간 만료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시장진입형) 운영 현황

(단위 : 원)

사업유형	자활센터명	사업단명	사업단 승인일	사업단 해체일	운영기간 (‘16.10.20. 기준)	매출적립금	매출적립금 회수여부
계						245,142,259	
사 회 서 비 스 형	○○○○자활센터	○○○청소	2009. 2. 1.	-	7년 9월.	29,027,566	미회수
시 장 진 입 형	○○○○자활센터	○○○○음식	2010. 1. 1.	-	6년 10월.	66,503,102	미회수
시 장 진 입 형	○○○○자활센터	○○○재활용	2003. 3. 1.	-	13년 8월	149,611,591	미회수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는

운영기한이 만료된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사업단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사업단 해체, 매출적립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